

사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19. SEP + OCT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OUR GREATEST GLORY I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공자  
(Confucius, B.C. 551 ~ B.C. 479)

## Contents



- 004 **special report**  
한국과 미국의 로스쿨 제도 & 변호사시험 제도  
지방소재 법전원의 현안과 과제
- 012 **power interview**  
우혜정 변호사
- 016 **hot issue**
- 022 **letter from**  
박상수 변호사  
홍수정 기자
- 027 **akls news**
- 028 **real story**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공다훈  
전민성 변호사
- 033 **book**
- 034 **contest**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 법령경연 학술대회
- 038 **happy lawschool**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11기 박상호
- 042 **opinion**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 048 **health mentoring**
- 051 **media essay**
- 052 **movie talk talk**
- 056 **culture**
- 058 **out campus**
- 059 **quiz**

### 2019. sep + oct

발행일 2019년 9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1

## 한국과 미국의 로스쿨 제도 & 변호사시험 제도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18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긴 역사를 자랑한다. 그 유구한 전통만큼이나 탄탄하고 체계적인 교육방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하는 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 로스쿨은 미국의 로스쿨을 모태로 하여 2009년 도입되었으며 지난 10년간 12,575명의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했다. 한국과 미국의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의 비교를 통해 독자들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김명기 사무국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1 로스쿨 제도

#### ■ 학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D.(Juris Doctor): 3년 과정으로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이자 대부분의 미국 변호사에게는 최종 학위이며, 가장 일반적인 미국 로스쿨 학위이다.</li> <li>LL.M.(Master of Laws): 대학원 학위 과정이며 두 종류로 나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 LL.M. - 해외에서 법을 공부한 학생들이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해보고자 할 때 입학하며 1년 과정이다.</li> <li>② 세부분야 LL.M. - JD 졸업 후 세부 분야를 심도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미국 학생들이 취득하며, 마찬가지로 1년 과정이다.</li> </ol> </li> <li>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 '법률과학 박사'를 의미하는 S.J.D 학위는 대부분의 경우 LL.M 학위를 취득한 이들에 한해서만 입학이 가능한 과정으로 해외학생이 고국이나 미국의 학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최종 과정이다.</li> </ul> <p>※ Ph.D. in Law: 2013년부터 예일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법학 박사 과정으로 미국 JD 졸업생들 중 학계에 진출하고 싶고, 법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다.</p>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학전문석사: 미국 로스쿨의 J.D 과정에 속하는 학위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li> <li>법학전문박사: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가 일반 법률실무 또는 특정 법률실무 분야에 대하여 한층 더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 수료하는 박사과정이다.</li> </ul>

#### ■ 입학 과정

미국 (J.D.과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성적, 학부 학업 성적(GPA), 학부 성적표 등이 필요하다.</li> </ul> <p>※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부를 비영여권 대학에서 마친 경우 토폴점수 요구</p>		
<table border="1"> <thead> <tr> <th>LSAT</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SAT는 1년에 3회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며, 평생 7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2019년 규정)</li> <li>- 응시료: \$190</li> <li>- 시험 영역: 논리적 추론, 분석적 사고능력, 독해 영역, 작문</li> <li>- 총점: 120-180점 사이로 표기</li> <li>- 매년 100,000~130,000명 가량 응시</li> </ul> </td> </tr> </tbody> </table>	LS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SAT는 1년에 3회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며, 평생 7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2019년 규정)</li> <li>- 응시료: \$190</li> <li>- 시험 영역: 논리적 추론, 분석적 사고능력, 독해 영역, 작문</li> <li>- 총점: 120-180점 사이로 표기</li> <li>- 매년 100,000~130,000명 가량 응시</li> </ul>
LS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SAT는 1년에 3회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며, 평생 7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2019년 규정)</li> <li>- 응시료: \$190</li> <li>- 시험 영역: 논리적 추론, 분석적 사고능력, 독해 영역, 작문</li> <li>- 총점: 120-180점 사이로 표기</li> <li>- 매년 100,000~130,000명 가량 응시</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 성적, 어학 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LEET</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ET는 1년에 1회 시행되며, 응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li> <li>- 연중 1회(7월) 시행</li> <li>- 응시료: 248,000원</li> <li>- 시험 영역: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li> <li>- 성적제공: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 제공</li> <li>- 매년 10,000명 가량 응시</li> </ul> </td> </tr> </tbody> </table>	L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ET는 1년에 1회 시행되며, 응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li> <li>- 연중 1회(7월) 시행</li> <li>- 응시료: 248,000원</li> <li>- 시험 영역: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li> <li>- 성적제공: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 제공</li> <li>- 매년 10,000명 가량 응시</li> </ul>
L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ET는 1년에 1회 시행되며, 응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li> <li>- 연중 1회(7월) 시행</li> <li>- 응시료: 248,000원</li> <li>- 시험 영역: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li> <li>- 성적제공: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 제공</li> <li>- 매년 10,000명 가량 응시</li> </ul>		

#### ■ 로스쿨 교과과정 및 교육 내용

미국 (J.D.과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과 한국의 법 체계는 다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교육의 목표는 동일하다. 로스쿨에서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과 다양한 기초법학, 인접과목, 전문법학 등에 대한 법률 교육이 이루어진다.</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엇보다 습득한 이론이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무실습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li> </ul>

■ 등록금과 장학금

**미국 (J.D.과정 기준)**

**<연간 등록금>**

Yale Univ.	63,878	단위: \$
Harvard Univ.	65,875	
Columbia Univ.	67,532	

자료 출처: 각교 홈페이지 (2019~2020년 기준)

- 위의 도표는 로스쿨의 연간 순수 학비(Tuition)만 표기된 것이고 실제로는 건강보험 및 건강 서비스 비용, 활동비, 거주 보증금, 식비, 도서비, 치과보험료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합산하면 연간 약 1억 원 가량의 비용을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

**<장학금>**

- 미국 로스쿨에는 다양한 장학금(scholarships)과 보조금(grants) 제도가 있지만 학비에 비해 장학금액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예일대 로스쿨의 경우 1년 학비가 63,878달러지만, 최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액은 15,000\$이다. 대개의 장학금은 연간 2,000~3,000\$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혜 인원도 극소수이거나 제한적(인종 장학금 등)이다.
- 연방정부에서 진행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법조인이 된 이후 매달 가계 총 수입의 10%씩만 상환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비싼 학비로 인해 빚을 지고 졸업하게 되지만 큰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 민간 부문 등 소득이 높지 않은 분야의 변호사로 취업한 자들을 위한 저소득 보호계획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한국**

**<연간 등록금>**

국립대 평균	10,433	단위: 천원
사립대 평균	16,775	

자료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18.02.27 (2018년 기준)

**<장학금>**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18학년도 재학생 12,117명 가운데 6,975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7.6%로 나타났으며, 기초~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총 정원의 17%)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2019년 기준)했다.

2 변호사시험 제도

**미국 (J.D.과정 기준)**

- 응시 자격**
  -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인가 받은 3년제 로스쿨 수료 또는 법학 학위를 수여하고 최소 4년 이상 법을 공부한 자
  - 통신제 법학원에서 4년 이상 법학을 공부한 자
  - ABA 미인가 로스쿨에서 공부했다면 법학학력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 시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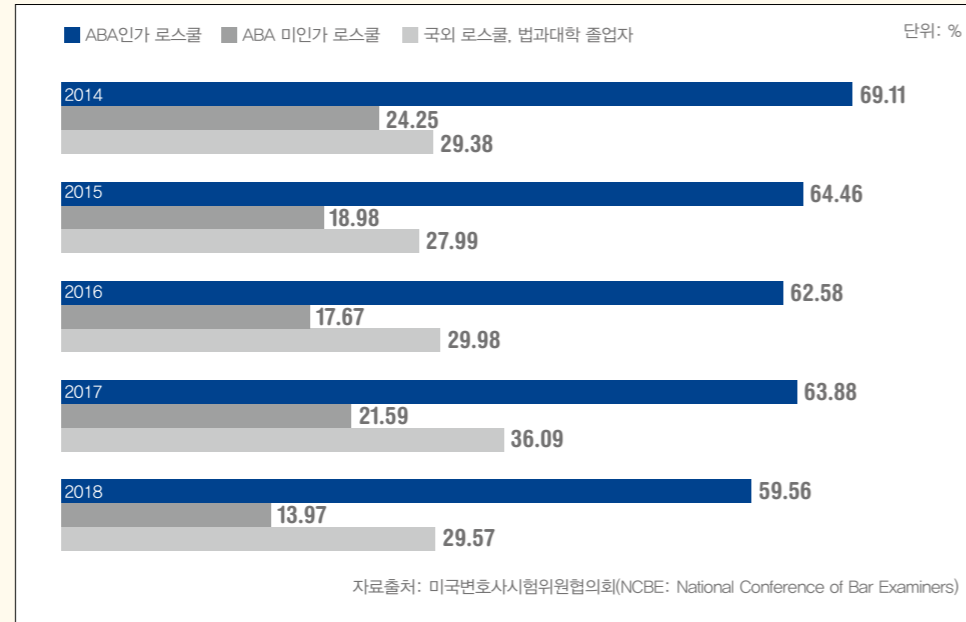
<b>필기시험</b>	(1) 연방법(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 변호사 취득요건의 주된 시험으로서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 ※ 객관식, 200문항 ※ 7과목(헌법, 계약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부동산법, 불법행위법)
<b>윤리성 시험</b>	각 주의 법조인자격관리기구에서 필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윤리성과 적합성(moral character and fitness)에 대한 심사를 한다. ※ 주에 따라 서류, 면접 등 심사 항목이 상이함.
<b>법조윤리과목 필기시험</b>	절대다수의 주에서 윤리성 심사와는 별도로 '법조윤리 과목' 필기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객관식, 50문항 ※ 매년 3월, 8월 11월에 시행되며 결과는 2년간 유효함

※ 최근 미국의 많은 주에서 통합 변호사시험(UBE: Uniform Bar Examination)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UBE는 전 주에 공통되는 객관식 시험(MBE), 사례형 시험(MEE), 그리고 기록형 시험(MPT)로 구성된다. UBE가 기존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다른 점은 주법에 따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주별로 주법의 내용을 묻는 시험을 유지하더라도 오픈북 형태의 인터넷 시험으로 대체해 사실상 주법 공부에 대한 부담이 거의 사라졌다.

- 응시횟수 제한**  
상당수 주에서 2~5회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J.D.과정 기준)

• 변호사시험 합격률



MBE 시험의 경우 연간 2회 시행되며 2월 시험에는 평균 20,000명~23,000명이 응시하고, 7월 시험에는 46,000명 가량 응시해 1년 간 약 7만 명의 학생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 현재 미국변호사협회(ABA: the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승인한 로스쿨은 203개로, 승인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AB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로스쿨,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자의 합격률은 ABA 인가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 합격자 결정 방법

MBE 점수와 서면 부분 점수가 합산되어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마다 합격 점수가 다르다. MBE 체제가 아닌 UBE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라고 하더라도, 각 주마다 합격 점수가 상이하므로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주의 합격점을 확인해야 한다.

•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응시 횟수 제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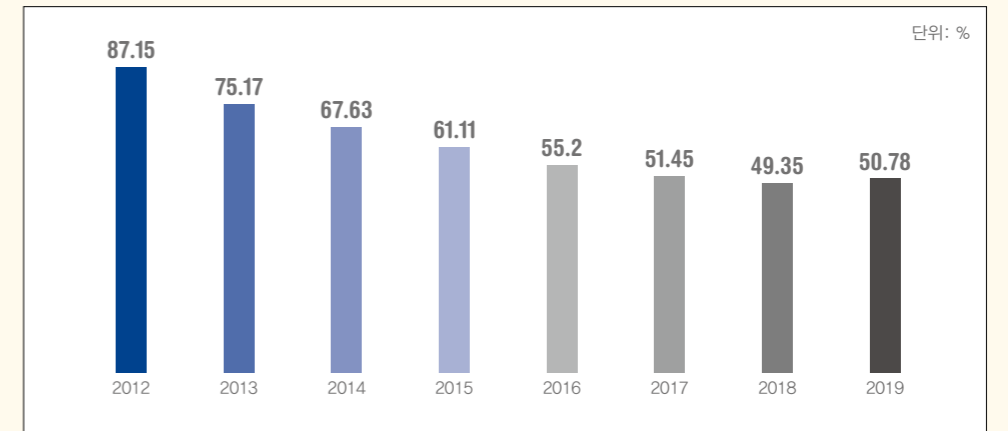
한국

한국

• 시험의 구성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1)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1개 과목을 선택해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법조윤리시험	매년 1회 실시되는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만점의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합격할 수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19년 1월에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하였으며, 1,691명이 합격하였다.

• 합격자 결정 방법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시사점

미국의 경우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법학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다. 반면, 한국은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 보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 지방소재 법전원의 현안과 과제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는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법전원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글. 조상균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에서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란 지난 2015년부터 25개 법전원 가운데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11개 법전원이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지역인재의 유출방지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인재의 육성을 통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도입의 타당성은 일면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강제하는 방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도했던 취지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시험 대학별 합격률 공개와 결합하면서, 지방 소재 법전원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법전원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문제점

#### ①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제도도입 취지와 적합성

법전원에 있어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이 경쟁시험화 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법전원 입시에서 우대를 해주는데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를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지역에 정주시키는 아무런 대책이나 현실적인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술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 ② 법전원의 양극화 심화

지역인재의 대상이 지방대학 출신자로 한정되어 있고, 변호사시험이 경쟁시험화 되는 상황에서 시험이 자격시험화 되어 있는 의치대 전문대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수한 지역인재가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방소재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고, 그러한 결과는 수도권 법전원과의 합격률 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될 것이다.

#### ③ 교육부 이행점검을 통한 강제화의 위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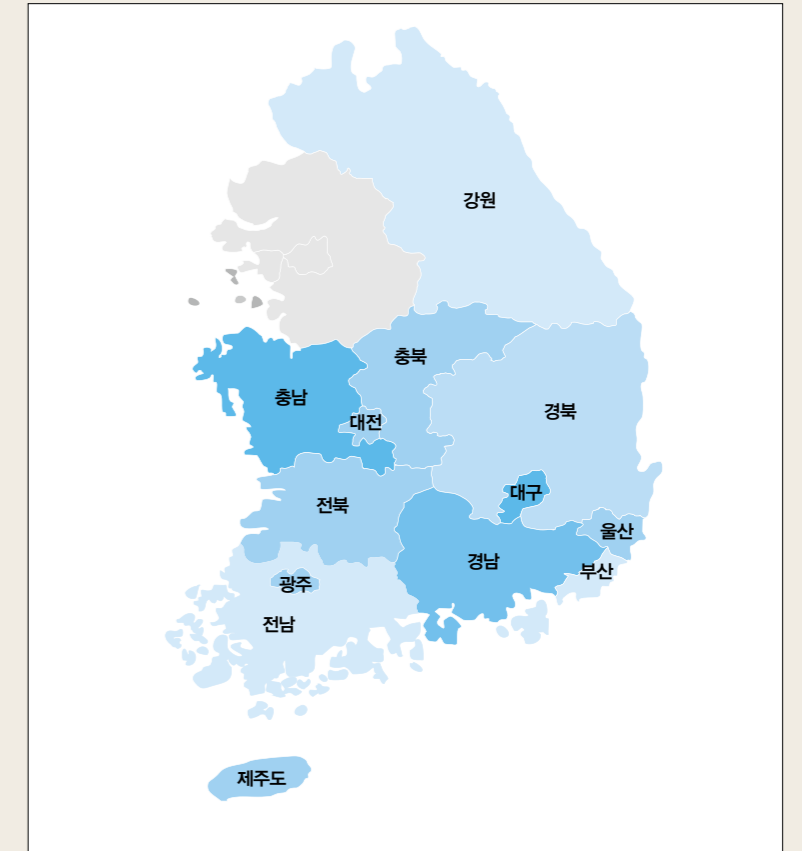
지역인재 육성법에 따라 법전원 설치대학 가운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법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체가 차별적인 기준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법전원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는 목적이 '법전원 질 관리'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그 기준은 법전원의 규모, 설립 지역, 설립주체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 영역 13개 지표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준수를 지방에 소재하는 법전원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 소재하는 법전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임은 물론, 대학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동일한 기준을 모든 법전원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각 법전원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이다.

### 개선방안

#### ① 지역인재 개념의 확대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 내지 취지에 부합하려면 적어도 지역적 연고가 있는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까지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지역인재의 정주화 방안 마련



혁신도시 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와 같이 정주화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거나, 지역인재로 입학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 최소합격률 보장제도와 같은 정책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③ 지역인재 선발 의무 주체의 확대

모든 법전원에 동일한 비율로 지역인재를 선발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설계하여 그 도입취지에 공감하는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방소재 대학 학생들의 수도권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균형 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본인의 지향에 따라 수도권 법전원에 진학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활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우혜정 변호사를 소개할 때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사학·교육분쟁 특화 변호사’, ‘교육전문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무실 한편에도 우혜정 변호사가 교육관련 분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보여주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 위촉장이 자리하고 있다.

## “학생들이 실수를 통해 더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닐까요?”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

###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 LSAT 시험문제 등을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계기로 법학에 대한 흥미가 다시 살아났고,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에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사회에 복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나에게 로스쿨 진학은 적성에도 맞고 미국에서의 아르바이트로 인해 어느 정도 입학 준비도 되어 있던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로스쿨에 들어갔고,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기 중에 최고령이었다. 학부를 다닐 때는 공부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로스쿨에서 20대 젊은 동기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던 차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알게 됐다. 늦은 나이이고 여러 형편을 고려하면 오래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에도 휴학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이어갔다. 뱃속의 아기에게 동기들이 녹음해 준 강의와 법전을 들려주는 것으로 태교도 대신했다(웃음). 교수님과 로

### 대학 때 인문학 관련 학부를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을 졸업한 후 한전과 한수원에서 계약과 관련된 일을 담당했다. 사실, 초기에는 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대졸 여성 직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대다수의 직장 선배들이 ‘네가 잘 하나 보자’하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웃음). 법학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법학의 논리 구조와 체계성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되었고, 내 적성에도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는 절차를 정리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지침을 제정하는 데 참여한 경험이 가장 뜻깊은 성과였다고 본다. 어쩌면 한편의 책자에 불과하지만, 수백 건의 사건에 대해 상담하고, 그 만큼의 강연과 사례조사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후 교육전문 변호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 다양한 교육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어떤 사건들을 맡아서 하고 있나?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소송, 교사 징계에 대한 소청이나 소송, 학교폭력 등에 대한 소송 등을 주로 선임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성추행, 폭언 등으로 학생에게 고발, 고소를 당한 교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자리를 빌려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감수성이나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려나 친근감의 표현 또는 훈계라는 선한 의도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교사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학생과의 의사소통 기법이나 대응태도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과거에는 ‘왕따(괴롭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폭행’, ‘성폭행’, ‘살인’ 등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최근 고등학생들이 친구를 감금, 폭행해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나 관련 소송건수가 많아지기도 했고, 통계적으로 보면 스토킹, 사이버괴롭힘, 성추행 등 점차 은밀해지고 폭력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사건이다. 예를 들어, 학교운동장에서 친구와 놀다가 부주의로 상해를 입힌 사고도 상당수 학교폭력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소송으로 비화되어 수 천만원의 피해보상건이 되기도 한다. 어린 학생들은 감정적 변화가 많고 교육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스쿨 선배, 동기들, 그리고 학교 식당 아주머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돌이켜 생각해 봐도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 법무부 인권국, 경상북도 교육청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당시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법무부에서 흠타티로 일하면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담당하였고, 교육청에서 교육분야 법률 및 소송담당, 조례 등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무부 근무 당시, 자력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배려계층을 지원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폭력을 처리하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우혜정 변호사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극단적인 사례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을 대응하기보다는 교실공동체 내에서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 폭력의 합의 및 조정 과정에서 형사 소송을 비롯해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실상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 보다는 사법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나 교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중재와 합의 도출을 통해 교실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회 등에서 학교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정 범위에서 자체적,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학생이 폭행,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변호사로서 본 우리나라의 소년법 처벌의 경중은 어떠한가?**

미국 등은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 학교 폭력 사안에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사고나 살인, 인종차별 등 중범죄가 학교에서 발

생하고 있고, 경찰관이 상당수 학교에 상주해야만 하는 나라의 상황과 우리 교육현장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수 십여 차례나 소년법을 적용받은 학생을 본 적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교육과 선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기성세대 역시 학창시절 모범적인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인영화도 보고, 뒷골목을 배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웃음). 한두 번 실수한 어린 친구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그들이 실수를 통해 더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하는 것이 학교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교직원, 공무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교직원이나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징계나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구제절차를 통해 본인의 의견이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심의나 심리를 받는 것 역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구제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질병과 같은 특수성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나 학부모의 요청을 반영했음에도 교원이 책임지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소청이나 행정심판은 직원탐주주의가 적용되어 해당 심판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아쉽다.

**다양한 교육분쟁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교육철학에 근거하여 반 학생들의 중재와 조정 과정을 통해 처리한 교사가 있었다. 교육부 매뉴얼과 무관하게 처리되었다는 점만 배제한다면, 최고의 조치를 했고 처리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도 만점이라고 보았지만, 결국 매뉴얼의

과정과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교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 그 소송을 담당하면서 비록 절차적 하지는 있더라도 교육적 효과와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공정한 처리 등을 강조하여 그 교사가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서야 하는 교육현장에 다시 복귀할 때 보람을 느낀다. 반면 반대의 상황이 되면 한동안 마음에 남고 송무일에 대한 후회가 들기도 한다.

**로스쿨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로스쿨이 정착되면서 정말 많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과거에는 가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으로 많은 변호사가 진출하면서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에 대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 기준이 정립되는 등 법치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적절한 대우와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자조도 있으나, 몇 년간 공공기관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

사가 혁신하고 발전시킨 성과를 보면 자부심을 느낄만하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곳이 많다는 점을 볼 때, 우리 후배들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관심분야에 대한 더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아, 그 분야에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행보는?**

얼마 전 사립 고등학교 학생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에 기여했다고 자부하지만, 송무를 통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개별적이라고 본다. 내가 교육부나 국회 공무원이었다면 단순히 헌법소원이 아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다. 기회가 된다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



우혜정 변호사의 사무실 한쪽에 자리한 각종 위촉장과 상장



# 1

지난 8월 30일(금)~31일(토) 양일간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10,291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해 공동입학설명회의 문전성시가 예고된 바 있었으며, 실제로 이를 동안 약 4,600명 가량의 수험생이 행사장을 찾았다.

## 로스쿨 입시 정보를 한 자리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개막식에 참석한 25개교 원장이 행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공동입학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0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의 첫째 날 오전 11시에 진행된 개막식 행사에는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김순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뒤이어 개막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5개 법전원의 개별 상담부스가 마련되었으며, 상담 부스마다 일대일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학생들은 지난 8월 14일(수)에 발표된 자신의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점수가 합격권인지, 부족하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일대일 상담에는 법전원 원장, 교수, 입학 담당자와 행정실장 등이 총동원되었다.



원장 및 교수들이 학생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가 진행된 이들 동안 행사장에는 약 4,600명 가량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찾았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개막인사 중 발취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우리나라 법조인의 역량을 결정한다는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왔습니다. 법전원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에서는 법전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일대일 상담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행사장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부스도 마련되었으며, 설명회 양일간 25개교 법전원 부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찾았다.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최수인(28) 씨는 “법전원 입학에 관한 다양한 설(說)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웠는데, 공동입학설명회에 참석해 교수님들께 상담을 받아보니 현재 나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수험생 이상윤(34) 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개별 법전원 설명회에 모두 참석할 시간이 안 되어 막막했는데, 이렇게 한 장소에서 25개 법전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효율적이었고, 많은 정보를 얻어 간다”고 전했다. 25개교 법전원은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면접전형(11월)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된 수험생들은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 내년 3월부터 법학도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생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대기표를 배부했다.

# 2

대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무변촌(無辯村) 법률상담, 리걸클리닉 등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형태는 무척 다양하지만, 자신이 가진 법률지식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모두 같다.

## 따뜻한 법, 나누는 법 19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교육 봉사활동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따뜻한 법, 나누는 법'이라는 슬로건 아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각종 법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매년 방학을 활용해 참여하고 있다. 법교육 봉사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을 주제로 하는 강의나 모의재판 등을 직접 진행할 수 있어, 예비 법조인으로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을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9년도 하계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부산 솔로몬파크' 등에서 진행되었다.

### 서울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법교육 봉사활동 현장 속으로

#### 서울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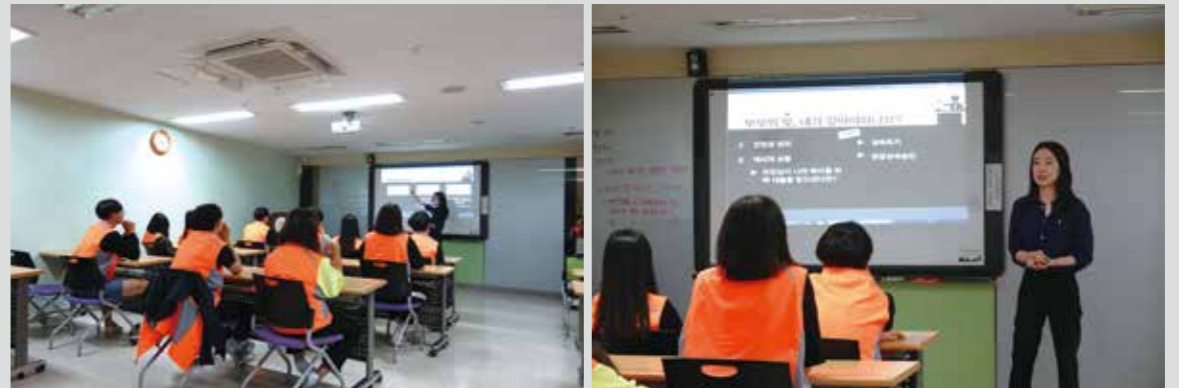
서울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에게 비행(학교폭력 등) 예방 교육, 인성교육,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기관이다. 서울남부센터는 현재 서울시 19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두고 비행 유형에 따라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예방 교육	보호자 교육	법교육	교원 직무연수
상담조사	가족캠프	일일체험·법체험	청소년 심리상담

“저희 서울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과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 유승국 소장



####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된 로스쿨 학생의 법교육 봉사활동, 어떻게 진행됐나?

학부 때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박소현 학생은 로스쿨 학생이 된 첫 해의 여름방학도 봉사활동을 하며 보냈다. 서울남부 청소년꿈키움센터 봉사활동에 지원한 까닭을 묻자 “가르치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따뜻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날 박소현 학생은 약 50분 동안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법적 상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수업은 ‘나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부모의 빚, 내가 갚아야 하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비밀녹음, 위법인가?’ 등 강의를 듣는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에 답을 해주는 시간이 이어졌다. 법적인 질문 외에도 ‘법조인이 되는 방법’,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하나?’ 등 진로와 연관된 질문도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기 박소현 학생



# 3

## issue 01

### 부산대 로스쿨 '정행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우승

지난 8월 22일(목)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이 개최됐다.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7개 법전원 8개팀(54명)이 참가했다. 본선은 서면 심사 30%, 경연 심사가 70% 반영되었으며, 치열한 경연 끝에 부산대학교 로스쿨 '정행심팀'이 대상(국민권익위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감'팀, 성균관대 로스쿨 '行복회LAW'팀, 고려대 로스쿨 '虎민관'팀이 차지했다.



## issue 02

### 제6회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 서울대, 충남대 로스쿨 우승 차지해

지난 8월 26일(월) 특허법원에서 제6회 특허소송변론 경연대회가 열렸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45개팀 가운데 24개 팀이 본선을 거쳤고, 특허부문에서 16개팀, 상표부문에서 8개팀을 선발했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사전에 작성·제출하고, 본선 당일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변론 경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특허 부문 1등상은 서울대학교 로스쿨팀이, 상표 부문 1등상은 충남대학교 로스쿨팀이 수상했다.



## issue 03

###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고려대 로스쿨팀 국회의장상 수상

8월 17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본대회 및 시상식이 개최됐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동법, 특히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제기되는 손해 배상 및 가압류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대회이다. 서면심사 결과 상위 8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은 고려대팀(배태영, 김승원, 설동연)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인 법무장관상은 충남대학교 로스쿨팀(최용현, 강빈, 김세중)이 수상했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5006번(고려대 로스쿨 배태영, 김승원, 설동연) (제공: 손잡고)

## issue 04

### 영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후배들을 위해 '실무수습' 지원

영남대 로스쿨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과 연계해 재학생 하계 실무수습을 진행해 화제다. 이번 실무수습은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재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 측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 실습 참가자들은 "평소 실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에서 실제로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류운선·10기)"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사출처: 법률신문(2019-08-20)



## issue 05

### 수원지방법원, 아주대 로스쿨생에게 국민참여재판 체험 기회 부여

지난 8월 23일(금) 수원지방법원이 아주대학교 로스쿨 1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형사소송절차와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공보관으로부터 국민 참여 재판 절차 및 관련 법률에 관하여 사전 교육을 받고, 미리 배포된 배심원 설명서를 토대로 공판을 방청했다.



## 로스쿨 제도를 위한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

한창 삼복 더위로 대한민국이 뜨겁던 2007년 여름, 국회에서 아무도 통과를 예상하지 못한 법률안 하나가 통과되었다. 바로 오늘날의 로스쿨 제도를 있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 발표때 처음 제시되었다가 표류하던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이 12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사법시험이 한창 시행될 때는 사법시험으로 인한 고시낭인의 양산과 법조귀족화 그리고 전관예우 등의 분위기로 인하여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았지만 막상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자 기회균등과 “희망의 사다리” 등을 논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시험은 흡수자들의 “희망의 사다리”였을까? 국가의 법률전문가 인력을 교육이 아니라 시험으로 선발하고자 했던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학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라 신림동의 사교육 시스템에 내던지듯 맡겨져 있었고, 당시 사법시험 학원들의 고액의 수강료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상고를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은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라는 증거로 많이

제시되지만 공교육으로서 법학교육의 형평화 속에 사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흡수저 고시생들에게 사법시험 최종 합격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반면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는 공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재건되었고, 지난해에만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소득 3분위까지의 재학생 1,04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재학생 중 과반이 넘는 57.6%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흡수자들이 법조인이 되기에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월등히 유리한 제도임은 이러한 수치로도 증명된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가장 큰 수혜는 구 사법시험 체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느꼈을 법조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학벌의 장벽과 카르텔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가 처음 논의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나라 검사장은 단 2개 대학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검사장을 배출한 대학이 10개 학교로 늘어났고, 소위 SKY 대학 출신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이러한 탈 학벌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25개 로스쿨 출신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법조인의 출신 학부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의 폐지 등의 영향으로 법조인 간의 기수 문화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법조 사회의 많은 폐단이 시험



한번 붙은 것을 이유로 국민 위에 법조귀족으로 군림하고 학연과 기수로 뽕뽕 뭉친 그들만의 카르텔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 인재 양성 학교의 다변화와 기수 문화 철폐는 법조 카르텔 완화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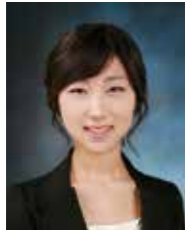
모든 개혁은 그 폐단은 즉각적인데 반해 그 효과는 점진적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사법시험이 오랫동안 국민들의 신분상승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나 애초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라는 직역이 신분상승의 대상이 되는 신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천을 돌아보지 않는 개천 출신 용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전히 개천에 살고 있는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더욱 강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랜 시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

령의 말과 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강고한 엘리트주의적 카르텔의 벽 앞에서 겪었던 고통을 토로한 내용이 많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법조 카르텔이 동료로도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던 로스쿨 세대 변호사들이 그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실개천의 목소리까지 듣기 위해 노력해 나갈 때, 로스쿨 제도가 이루고자 했던 사법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박상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진칼 준법지원인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 로스쿨 생활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법률신문

홍수정 기자

안녕 친구.

당신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잠시의 여유를 내기에도 빠듯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줘서 고마워요.

얼마전 당신이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흔한 결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로스쿨 생활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을거예요. 그건 저의 몫이 아니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법이나, 성공한 법조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로스쿨에서 가르쳐주지 않을 이야기를. 당신의 오늘 하루에 도움이 되지 못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믿기지 어렵겠지만 로스쿨의 생활도 언젠가 끝이 난답니다. 그때가 되면 치열했던 지금의 오늘 하루도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지지요. 그 때에 다가올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화를 내겠죠.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바쁜 시간에 무슨 소리냐고 되물어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부디 이 글은 재미 삼아 읽고서 잊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기. 잠시 창문을 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이 훗날 예상치 못한 길을 걷게 된다면, 그때 이 글을 잠시 떠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말이죠. 걱정말아요. 빛나는 당신의 인생에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예방주사. 이 단어가 적당하겠네요. 너무 깊은 아픔이 찾아오지 않게 미리 맛보는 적당한 통증 말이죠.

매물. 로스쿨 시기를 생각하자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저의 지인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웃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에 매몰되지는 않았어도 로스쿨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벗어날 용기도, 그렇다고 최선을 다 할 열의도 없었죠. 매일 하루의 일정에 쫓기며 허덕였고, 조금의 괴로움이나마 회피하려고 도망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든, 좋아하든, 열심히 하든, 안하든, 결국 저의 모든 순간은 로스쿨의 자장 안에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든 다른 생각을 하든 결국에는 열람실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렇게 삼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졸업을 하고 변호사시험 결과를 기다렸죠. 몇 달 뒤 시험 결과가 나왔고 저는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다시 몇 번의 시험을 반복하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로스쿨의 영향에서 벗어나 현실의 눈으로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뤄둔 현실들이 제게 돌진해 온 순간이요.

미뤄둔 현실이라 하면 결혼, 취직에 대한 고민이라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현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7년 전의 그 시절에 멈춰있는데 세상은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흘러있었죠. 그건 꼬마일 때 보았던 사촌 동생이 장성한 모습을 본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후회'라는 단순한 단어에 품을 수 없는 감정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들어갔다 잠시 즐았는데 어느덧 영화는 끝나버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관객들이 영화에 감동을 받아 있다면 비슷한 느낌일까요. 저는 무언가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놓쳤는지 몰라 당황했지요. 지나고 보면 제가 놓친 것은 사회적 성장이었습니다. 친구, 사회적인 성장은 어디에서 올까요. 저의 성장은 책이 아닌 일상에서 왔습니다.

무협 영화처럼 홀로 은신해 무술을 연마하는 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 어린 시절 친구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마다 찾아왔지요. 그렇게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며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 저는 사회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로스쿨을 다닌 시간 동안 저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죠. 하지만 성장이 없어도 시간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몸의 감각이 26살에 멈춰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게서 33살의 여자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친구, 혹은 당신도 미래의 어느 때에 당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치열한 시험에서 벗어났을 때, 문득 세상과 다른 속도로 살아왔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사회적인 경험을 놓치고 말았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



습니다. 그래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 순간도 어느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놓친 영화를 따라잡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저는 2배속으로 영화를 돌리며 남들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서둘러 성장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빨리보기'가 제대로 된 감상일 수 없듯이, 서둘러 따라잡은 시간이 제 인생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영 찾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냈음을. 내가 로스쿨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사실은 무척 소중한 것임을. 그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시절이었음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내는 매일의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죠. 언젠가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생각보다 눈부신 시절이었음을 말이지요. 그러니 부디 최선을 다해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하듯, 기억에서 지우듯 오늘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을 충실하게 감각하며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스쿨의 시간을 모두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시험 발표날이 생각나네요. 결과를 확인했던 순간의 막막함 말이지요. 당신에게만 비밀을 말하자면, 저는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서 시간을 보내며 내게 닥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지요. 저는 인생 처음으로 맞이한 완전한 실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고, 툴툴대면서도 한 길만 걸어온 것이죠. 이제 다른 길을 찾으라는 인생의 명령에 저는 명청해졌습니다. 그건 무기력도 우울도 아니었습니다. 진공상태. 그때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서 다른 방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의무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즐겁

지 않았지만 아주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조금씩 웃음을 찾고 그렇게 저는 지금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거나 어딘가로 올라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그날 그 장소로부터,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누워있던 그 날의 거실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겠지요.

시험 따위 어찌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고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식입니다. 다른 길이 탄탄대로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길은 그곳에 있더군요. 더 행복하다 말하기에는 저어되지만 소소한 즐거움도 계속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성취와 실패도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생각보다 근사한 성공이 있을 것이고, 분명 성공이라 생각했던 것들 중에 실패로 밝혀지는 순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을 성공과 실패로 가르느라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는 마세요. 그 판단에 매몰되지도 마시고요. 그저 맨발로 흙을 밟는 기분으로 한 걸음씩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길이 없다 느껴진다면, 실패가 너무 슬프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의 대화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잘 해나가리란 것을 나는 알아요.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연락하기는 힘일 들겠죠. 사랑해 마지않는 나의 친구 홍수정에게, 이제 로스쿨 생활을 시작하는 26살의 당신에게 이 편지를 부칩니다. 부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정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씨네21 영화평론상 수상  
現 법률신문 기자  
soojung@lawtimes.co.kr

# AKLS NEWS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2019.  
sep + oct

09+1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19일(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전문대학원협의회와 사법연수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는 김순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 9인과 김명기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김문석 원장, 성수제 수석교수 외 5인의 교수가 참석했다. 사법연수원과 법전문대학원협의회는 상호 협력 방안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출강 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2019학년도 제3차, 2020학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 실시



8월 20일(화)부터 8월 23일(금)까지 '19년도 제3차,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가 진행됐다. 총 85명의 출제위원이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로스쿨 교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위촉한 출제위원(판사, 검사 등)도 함께 참여했다. 총괄위원장은 김순석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김대환 원장(공법), 김성천 전 원장(형사법), 오종근 원장(민사법), 배대현 원장(선택과목)이 각 영역별 위원장을 맡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연수 세미나 개최



8월 27일(화)부터 28일(수) 양일간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세미나가 강릉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차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 횟수, 차년도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여부, 표준판례 선정 연구추진 등 법전문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김순석 법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20개교 법전문 원장이 참석했다.

## 기어가는 혁명을 위하여<sup>1)</sup>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공다훈

**0.** 꽃 보기로는 봄이 가장 좋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6월의 깨끗한 여름 꽃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오늘도 공부 중에 잠시 나와 캠퍼스에 가득한 작약과 기린초, 패랭이꽃을 보며 산책을 하는데, 그러다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꽃을 볼 날도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던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은 다소 막연한 지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검찰과 법원을 담당했는데, 매일 판결문이나 여타 법률 문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 다. 물론 “~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것이며”처럼 못생긴 문장을 마주할 때마다 간명한 문장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간명하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몇 번을 읽어도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다거나, ‘고소’와 ‘고발’ 개념마저 구별하지 못해 기사 작성에 초보적인 실수를 하는 스스로를 보며 법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하필 한 검찰 수사관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런 말까지 했지요.

“공 기자는 기자 일보다도 법 공부를 하면 잘하겠는 걸!”

**2.** 안타깝게도 그분의 기대와는 달리 법전원에 입학하면서 시작한 법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 분 말씀은 기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일 수 있음을 이제는 압니다). 기자 일과 법 공부는 여러 면에서 달랐고, 그래서 적응하는 데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우선 ‘교정(campus)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자 일과 달리, 법 공부는 차분히 도서관 자리에 앉아 종일 책을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막연한 원칙을 전제로 세상을 평가하는 저널리즘과 달리, 칼로 무 베듯 ‘요건’과 ‘효과’로 그 모두를 가르치는 법학의 논리체계 역시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법률 문장의 모양새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이 된다면 법 문장의 문체반정(文體反正)부터 단행하리라 하고 상상해볼 정도였습니다.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을 벌다가 갑자기 쓰기만 하게 되니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물여덟, 또래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을 때, 학교로 돌아와 다시 학생이 되어 사회로 나갈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이 주는 심리적 압박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우연히 동료 선후배가 TV에 나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외롭다 느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달래고 스스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3.** 이처럼 어려움도 있었지만 뚜벅뚜벅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점차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만큼 역동적이지는 않아도 소소한 즐거움이 곳곳에 숨어있었습니다. 하루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할 때의 상쾌함이 좋았고, 학내 동아리인 ‘입법정책학회’에서 회장을 맡으며 다양한 분야의 입법론에 대하여 토론할 때의 치열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야 할 공부는 징그러울 정도로 많았지만 그만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쏟아지는 시험과 시험 사이에서 카페인으로 버티다가 두통을 앓던 날이나, 동기들과 변론대회에 나가 상을 받은 순간에는 느릿느릿하더라도 결국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기자 출신이라 생긴 특별한 웃음거리도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단독보도 했던 사건이 판례가 되어 ‘형법총론’ 시간에 소개될 때는 ‘검찰 수사관님이 사람 잘못 본 게 분명해. 기자로도 괜찮았어’ 하는 괜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하필 그 판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질문해 온 동기에게 취재 뒷이야기까지 설명할 때는 뿌듯함이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으로 실무수습을 나갔다가 취재기자 시절 알고 지내던 판사님이 강의를 하러 오시는 바람에 서로 웃음 참느라 혼란 기억도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판사님은 저에게 “왜 여기에 있어?” 하고 안부를 물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분이 저에게 반말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학생으로의 신분하락(?)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왕이 되어 할 일이 있는데 말입니다).

**4.**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가장 크게 절감한 교훈은 ‘디테일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넘어간 학설 하나, 판례 하나에 어김없이 발목이 잡히는 일을 경험하며, 법으로 세상을 능숙하게 미분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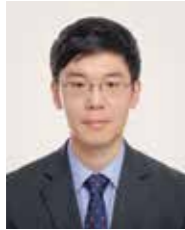
해서는 끈기 있게 디테일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음을 느낀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최고 덕목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기억에 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책에 자를 대고 밑줄을 긋는 동기들을 보며 한 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목수의 자세를 닮았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비단 법학에서 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유효한 교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인생 전체에 대보면 그야말로 디테일이라 부를 만한 것으로 어떤 하루로도 삶 자체를 크게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그 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매일 판결문을 보다가 어느 순간 법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때나, 어려움밖에 없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이 그야말로 ‘생활’이 된 스스로의 과거를 굳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미래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두었던 내가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법학전문대학원 반년의 생활도 디테일을 챙기겠다 다짐해봅니다.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쯤이면 새 계절이 들어와 여름꽃은 진즉에 지고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걸으려는 가만히 선 꽃나무는 가을과 겨울, 봄에 조금씩 스스로를 바꿔가며 다음 여름 새로운 얼굴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터입니다. 그렇게 모든 혁명은 기실 기어가는 혁명일 뿐이라고 여름꽃은 말하고 있습니다.

1) 제목은 문필가 고종석 선생님의 동명의 글에서 따왔습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민성 변호사

### 1. 서설

제가 택한 방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글을 적었습니다. 좋은 점만 취하셔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2. 스터디 활용

저는 공간시간을 이용해서 오후 13:00~14:25에는 객관식 풀이 스터디를,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인 19:00~22:00에는 사례·기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2학년 2학기 때는 형사 사례형, 형사 기록형을 위주로 시간을 정해서 1일 1회, 주 4~5회를 공부했고, 3학년 1학기 때는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객관식, 사례, 기록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1일 2회[오후, 저녁시간], 주 5~6회), 3학년 2학기 때는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객관식, 사례, 기록을 번갈아 가면서(1일 1회) 진행했습니다.

### 3. 객관식 공부방법

객관식은 하루에 85분 50문제씩 풀었고, 푸는 방법은 총 3회로 순환한다고 생각하고 객관식 문제집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을 총 3순환에 걸쳐서 풀고 객관식 문제집과 암기장 등에 상호간 쪽수를 적어놓고 후에 복습할 때 암기장 등의 짧은 지문을 보고 판례의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객관식 문제집으로 돌아가 판례 원문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예를 들면 1회차 풀이 시에는 민법 1번, 4번, 7번, 10번 ..., 2회차 풀이 시에는 2번, 5번, 8번, 11번, 3회차 풀이 시에는 3번, 6번, 9번 순서로 풀면 총 3회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1회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터는 암기장 등을 통해 보면서 아예 모른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V표시, 헛갈리거나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문제들은 ■표시를 해서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 전에 수회 읽었습니다. 객관식을 풀 때에는 서식을 만들어서 그 서식에 5지선다의 경우 잘 알고 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OX로 명확히 표시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로 표시한 후 복습 시에 객관식 문제집 해설편 지문에 표시하여 다음에 볼 때

헛갈렸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학년 6월, 8월, 10월 모의고사 중 책에 반영되지 않은 지문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해당되는 쪽을 찾아 가필해 놓고 공부했습니다.

### 4. 사례형 공부방법

사례형은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시간으로 설정한 후 풀어보고, 실력이 부족해서 풀지 못할 경우에도 최대한 시간에 맞추어 법전 내용과 생각나는 학설, 판례를 써보도록 노력했습니다. 복습할 때에는 답안지를 보고 침삼도 해보고 쟁점 정리도 해보았습니다. 3학년 후반부에는 시간 부족으로 쟁점만 잡고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난 후 복습을 할 때에는 객관식과 같은 방식으로 익숙하지 않은 쟁점은 암기장을 찾아서 암기장과 문제집 해설 목차에 상호 페이지를 적어 놓고 다음에 볼 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복할 때는 짧게 쟁점과 판례를 OX식으로 적어 놓고 답을 먼저 외우고 그 후에는 키워드나 논거를 붙여서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안의 포섭 연습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구조를 외우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중심으로 어떤 것이 쟁점화 되었는지 외우고 한 가지 쟁점이 나오면 다음 쟁점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경우 그 흐름의 종류와 각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간략하게 적어서 구조화 시키고 반복해서 암기하였습니다.

### 5. 기록형 공부방법

기록형을 공부할 때 형사와 민사기록의 경우 기록 1회 당 A3 용지 1장에 도식화하여 적어 놓고 A4용지에 축소 복사하여 모아 놓은 후 모의고사, 변호사시험 직전에 여러 번 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공부기록의 경우 문제집 답지부분을 교수님께서 수업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 편집해서 그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민사기록의 경우 도식화 할 때 원고와 피고의 색을 달리하고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을 색을 번갈아 가면서 적고 결론은 예시처럼 하단에 모아 적거나 때로는 굵은 펜으로 적어 눈에 띄게 적어 놓아 어떤 쟁점이 나왔고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문제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형사기록의 경우 문제집 목차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조문과 쟁점 결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적어 놓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6. 생활습관 및 시험장에 적응하기

3학년 때는 주로 2:00~8:00 정도로 5시간 30분에서 6시간 30분 정도의

수면을 유지했고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만 시험 한두 달 전부터는 실제 시험시간에 적응하기 위해서 1:00~7:0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마음에 여유가 없고 초조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3번의 졸업시험을 견뎌내는 것만으로 힘들었습니다. 비타민이나 홍삼 등을 복용하고 식사 후에는 걸으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책감 같은 감정이 들기도 했으나 몸이 지나치게 힘들면 가끔 낮잠을 자는 방식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를 보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방심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험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변호사시험 2~3주 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기간에 적응여부가 시험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도착한 첫 날에 동선을 파악한 후 2주 정도의 시간은 기숙사 안에서 공부했습니다. 식사 후에 운동 삼아 고사장까지 다녀오는 것으로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6월, 8월, 10월 모의고사는 실제시험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 기회를 가벼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신중하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의 기회를 통해 내가 이정도 시간을 시험을 치면 몸의 반응이 어떤지, 잠시 눈을 붙여야 하는지,





식후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서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7. 마치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합격 문자를 받은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의 행운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변호사로 만들어준 제주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많은 이들의 도움에, 앞으로도 평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렇게 변호사시험에 붙었으니 저보다 뛰어난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마음만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본인과 잘 맞는 내용은 참고하시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scjmin@naver.com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늦더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에, 좋은 자리에서 뵈겠습니다.

book



##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6월) 모의시험 해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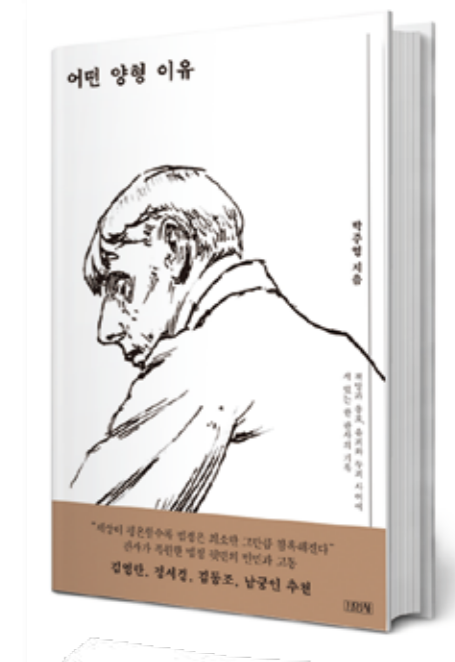
지난 6월에 시행된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2019년도 제1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①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②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 현직 판사가 말하는 <어떤 양형 이유>

저자 박주영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된 그는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썼다. 저자는 법정에서 마주친 이들과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건조하고 비정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사연들에 대해 말한다. <어떤 양형 이유>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저 자	박주영
출 판 사	김영사
발 행 일	2019.07.26
가 격	16,000원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

##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는 매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법률안 제·개정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시에 제안한 아이디어가 법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제5회 대회에는 116개팀, 351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 ■ 참가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 ■ 주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제외하며, 제정안은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특별 법이어야 함.

### ■ 진행방식

참가신청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	---



공모작품 접수	<p>❶ 법률 제·개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li> <li>• 법률안</li> <li>• 신·구조문대비표</li> </ul> <p>❷ P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안의 제안 이유: 현행 제도 또는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입법의 필요성, 유익성,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추진 배경을 밝힘.</li> <li>• 주요 내용: 제·개정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함.</li> <li>• 제·개정 법률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 조문을 적시하고 그와 같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이유를 기재(신·구조문의 대비를 통한 설명도 가능)</li> </ul>
------------	---



김우수 법무부 차관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작성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1)</sup>

의안 번호	공란	
		제출연월일 : (서면제출일 기재) 제 출 자 : (참가번호기재)

**제안이유**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고 …… (이하 생략)

**주요내용**  
가.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안 제14조제7항 신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생략)

### [법률안 작성례]

법률 제 (공란) 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sup>2)</sup>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7항(해당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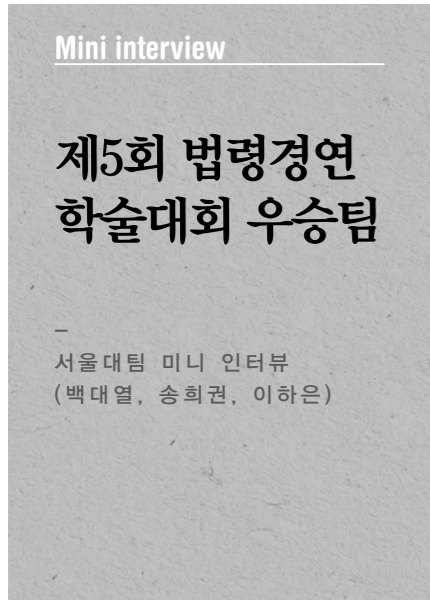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이 아닌 개정인 경우에는 '신설한다'가 아닌 '한다'라고만 함).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1) 제정안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기재함

2) 제정안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기재하여야 하고, 이하에서 '신설한다.', '한다.'라는 부분 없이 단순히 제정하는 법조문을 모두 기재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음



**수상소감을 말씀해주세요.**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에 관해 깊게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가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과분한 영예를 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제도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인 만큼, 더욱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팀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세 분이 함께 출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요.**

저희 팀은 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세 명으로 구성되었고, 셋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9기로 재학 중입니다. 작년 겨울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민사 부문에 함께 출전하여 가인상을 수상한 이후, 다시 한 번 함께 의기투합하여 이번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대회 준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 분야나 성격이 비슷하여 합이 잘 맞아, 대회 공고 이후 큰 고민 없이



즉석에서 대회 출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마다 관심 분야가 달랐을 텐데 대회 주제는 어떻게 조율해서 선정한 것인가요?**

대회 공고 이후 약 1달 정도 각자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공유, 정리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클라우드펀딩, 퍼블리시티권,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고, 그 때마다 각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관심 있는 주제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뒤에는 ① 입법의 필요성, ② 실제 입법 가능성, ③ 주제의 참신성, ④ 해당 주제에 대한 팀원들의 관심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대회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회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약 1달 반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토의해 본 것이 실제 대회 준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제출한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자정보 유·무상제공계약을 각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는 한편 ②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책임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위 법을 제조물 및 소프트웨어 책임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될 각종 전자정보 관련 거래에 관한 기본적 규율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점을 고려하여 부족하나마 전자정보 관련 거래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으나, 그 중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자정보 유·무상제공계약을 각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① '제공'의 의미 ② 유·무상의 구분 기준 ③ 제공자의 담보책임을 비롯한 제공자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관계 ④ 전(轉)제공의 법률관계 ⑤ 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관계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여 소프트웨어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① 소프트웨어의 개발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를 비롯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에 구체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② 소프트웨어 책임의 구체적인 면책사유 ③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 대한 특칙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안을 작성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이었나요?**

주제 선정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입법의 필요성 및 ② 실제 입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특히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경제적·법적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개정안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될 당사자들의 각 입장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령,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하겠지만, 그 책임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면책사유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소규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 대한 특칙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실제 법문을 구성함에 있어 기존 조문과의 통일성이나 조화, 조문 간의 배치 순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입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특히 전자정보 관련 거래의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다수인만큼,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을 비롯한 각종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는 한편, 초안 작성 과정에서 팀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서서 열린 토론을 벌이며 몇 번이고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참고할 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쟁점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특별법상의 유사한 제도에 관한 각종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대립하는 학설들을 세워 보고 이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6회 대회 참가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 출전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특정한 문제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대회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모든 쟁점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설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고되지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 40여개 조에 달하는 개정안 및 약 120장에 달하는 개정안 설명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없었다면 분명 거짓말이었지만, 팀원들과 밤을 새워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 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암기해야만 하는 로스쿨 생활에 지쳐갈 때쯤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필요하시다면, 법령경연 학술대회 출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박상호 학생은 어디에 속해있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는 학창시절 각종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상위권 학생에게만 입학의 자격이 주어지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뿐만 아니라 육군 임관 장교 2,000명 가운데서 수석을 차지하는 등 몇 가지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 해왔는지 알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사관학교 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공주 한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년 내내 엄격한 규율 하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관학교로 진학하는 선배들이 많았다. 또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웃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많은 장병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통솔력을 갖는다는 건 생각보다 멋진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 4년간의 사관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

고등학교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었지만, 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1년 정도는 통제된 생활과 높은 기강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주말에만 외출이 가능하고, 학기가 끝난 방학에도 특전사 공수훈련, 유격 등의 각종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규제의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동기 및 선후배 생도들과 동고동락하며 쌓은 추억들, 그리고 4학년이 되어 후배생도들을 지휘하였던 경험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돌이켜 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한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다.

###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일련의 사건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우

리나라의 군사법 체계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군사법의 적용대상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을 반드시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에는 법관이 아닌 재판장을 비롯하여 지휘관 관할제도, 군판사와 군검사의 순환보직 등 군 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이 많다. 군사법 체계의 불비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보며, 개선방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전역 후, 로스쿨 입학 전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했나?

전역 후 두 달 정도 공부를 한 뒤 리트시험을 봤다. 다행히 리트가 법학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었고 시중에 기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다.

리트 시험을 본 후 로스쿨 입학 전까지는 교육계 기업 인사팀에 입사해서 근무했다. 회사의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을 익히고 채용, 교육(HRD) 및 조직개편(HRM) 등 잠깐이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 로스쿨에서 한 학기를 보낸 소회는?

확실히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량은 고3 수험생 이상으로 많고, 상대평가가 워낙 엄정하게 이루어져 그만큼 스트레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11기

박  
|  
상  
|  
호  
|  
학  
|  
생  
|

도 심하다. 하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스트레스에서 초탈하려고 노력 중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 지난 1학기에는 밤 11시 즈음 공부를 마친 후 동기들과 '소모임'(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야식모임'이었던)을 자주 열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했다. 낮에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밤에는 마음 맞는 학우들과 모임을 하면서 한 학기를 보낸 거다(웃음).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했을 것 같다.**

입학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과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선행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입학해서 많이 헤맸다. 스터디를 하면서는 스터디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에 자책하기도 했었는데, 같은 스터디원 중 사관학교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이 필기 정리나 예습·복습, 사례를 공부하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되니 초조해하지 말라고 조언해줬다. 선배의 말처럼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마치 속기사처럼 수업 노트도 빠짐없이 하고, 스터디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학업 이외에 하는 활동이 있다면?**

현재 형법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군사법 체계를 개선하려면 균형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균형법의 경우 일반 형법과는 다른 특별 형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해야 한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균형법을 별도로 공부하고 있고, 올해 가을에 개최되는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의 출전도 준비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학교에 대형 로펌 변호사님께서 특강을 오신 적이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는 오직 로펌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할 것 같았는데, 변호사로서 입법과정에도 참여하고 계셔서 무척 놀랐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길이 있지만, 입법 청원제도처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

다. 다만 개인이 입법청원을 하기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 기회가 된다면 로펌에 입사해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덧붙이자면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법조인이나 법조계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국민들이 법조인 중에도 좋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하는,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Lawschool TIP**

**박상호 학생이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1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동기를 분명하게 밝혀야**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자기소개서든, 어느 면접이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다. '왜 법조인을 꿈꾸는지', '그에 대한 열망은 얼마만큼인지', 또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진학 이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2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과 일관성 있는 답변**

면접의 경우 주변에서 스터디를 하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다.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스터디를 꾸려서 기출문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연습해보기를 권한다. 연습할 때부터 실제 시험장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바른 자세, 표정 등도 미리 연습하고 무엇보다 답변을 할 때 과한 손동작은 지양해야 한다. 또 면접에서는 답이 틀렸을지라도 자신 있게 답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자신의 논리를 선화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로스쿨 창에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은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 외부 필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창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의견도 기탄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howe@leet.or.kr)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취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대리 02)752-2037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비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

## 1. 헌법재판소의 결정<sup>1)</sup>

(1)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응시기회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응시기회 제한이 없는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자들과 비교하여 위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이나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위 시험들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입법자는 사법시험 재응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변호사시험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1)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 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회제한 조항의 문제점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응시기간 제한’이라고 하며, 5년 이내에 응시횟수는 5회로 제한하는 것을 ‘응시횟수제한’이라고 한다.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응시기회제한 조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응시기회제한을 통상적으로는 오탁제도라고 하며, 이 조항으로 인하여 응시자격이 박탈된 자를 5탈자라고 부른다.

2009. 5. 28.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도입된 응시기회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응시기간을 졸업(예정) 후 5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졸업 후 5년 내에 5회를 응시할 수 있어 해마다 응시기회가 주어지 있지만,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그 동안 졸업자의 사정으로 단 1회도 응시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

로만 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자격취득 시기를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제한하는 응시기간제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3. 응시기회제한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그 비판

(1)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제시한 논거는 2009. 5. 28.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조항의 입법취지와 완전 동일하다. 이런 내용의 입법취지는 법무부가 2008년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응시횟수 제한에 관한 이유이기도 하다. 합헌결정의 논거인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부분은 과거 사법시험 당시에 발생하였던 현상들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은 2012년에 시행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2016. 9. 29.에 내려졌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 불과한 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변호사시험에서도 사법시험 때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거나 장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 방지 문제

헌법재판소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개인의 장래에 대한 배려 및 우수 인재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없으면 사법시험처럼 고시낭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관념적인 의제에 불과하다. 사법시험은 판·검사 임용시험으로 기능하였기에 장기간이라도 시험공부를 할 만한 매력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오로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불과하다. 공직으로 진출하려는 자(재판연구원, 검사임용예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이미 선발된 상태이다.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취업의 곤란과 소득수준도 현저히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는 이른바 변시낭인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8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졸업 후 몇 번 응시한 후 성적이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응시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㉔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방지 문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방지”를 한다고 한다. 이는 장기 수험생들의 배제로 변호사시험의 경쟁완화와 일정한 합격률 유지에 관한 것이다. 시험합격 결정기준에 관하여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정의하고 있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험합격률의 결정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 (1,599명)이었지만, 제8회 시험 합격률은 50.78% (1,691명)로 오히려 상향되었다. 응시자들이 예년보다 증가되었음에도 합격률은 높아진 것이다. 응시자의 증가가 곧바로 합격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응시인원이 누적되면 합격률이 저하된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는 합격인원이 특정(고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해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구조에서는 응시자의 증가가 합격률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㉕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방지 문제**

마지막으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한다고 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가 소멸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없으며, 교육효과가 소멸된 자에게는 응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최초로 입법취지에 기재한 ‘교육효과 소멸’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헌법재판소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만약 졸업 후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교육효과가 소멸된 효과로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와 존속기간은 불과 5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응시자가 불합격한 원인을 교육효과와 소멸 때문이라고 해야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제대로 하였다는 추정이 도출된다. 만약 응시자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원인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존립근거를 잃게 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교육효과가 소멸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인원만 합격시키는 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효과와 소멸이라는 논거로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무튼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는 교육효과와 소멸 때문이라는 논거가 타당하려면, 응시자가 졸업 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응시하였음에도 불합격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불의의 사고, 질병치료나 경제적 사정의 악화, 결혼과 출산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도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와 소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㉖ 소 결**

**1) 응시기간제한 조항의 위헌성(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응시기간제한과 응시횟수제한을 포함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응시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시기간제한 조항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장차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을 선택할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5년 이내에만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을 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고시낭인 방지 등을 위한 입법목적과 그 수단의 적합성은 긍정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에게는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개업시기도 전적으로 그 개인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려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는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제한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특



정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험에 응시할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응시기간제한 조항은 오로지 장기간 시험준비하는 것을 막고자 졸업 후 5년 안에 시험을 끝내라는 것이지만, 그 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응시횟수제한 조항의 위헌성(자기운명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응

시횟수제한과 관련해서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인생 자기결정권 문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인간의 삶을 오로지 직업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함이라서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시험공부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본인의 인생에 관한 중대한 결정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자기책임의 원리까지 언급하고 있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응시횟수제한은 변호사가 되려는 인생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응시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수험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정해두고 하루하루 지내는 각 개인의 삶의 태도나 그 방식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소의 시간의 걸리더라도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소망을 국가가 강제로 좌절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수험생이 장기간 시험준비를 하게 될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설령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여부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인생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응시자들에게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 세대라는 이유로 응시횟수의 자유도 충분히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자기인생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2)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기회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평등권의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응시제한이 없었던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응시자격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은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 시험들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의 심각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저런 문제는 사법시험 때 발생하였던 것이지 변호사시험 시행 이



후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은 응시자 인원 역시 해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2천 명 정도에 불과하여 인력낭비의 심각성도 나타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자격시험 내지 사법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기회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를 여러 관점에서 비교집단으로 삼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직무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변호사법 제2조)이며,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세무사법 제1조의2)이고,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전문가’(관세법 제1조의2)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무의 공공성을 공통의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와 관세사를 비교대상 집단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는 의과대학, 약학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력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경력법관, 검사 임용시험 응시자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들 그 어떤 직종의 자격취득 시험에서도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만 응시기회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 않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의 결격사유와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결격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자에게 주어진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응시 결격사유”(변호사시험법 제6조)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기회를 상실한 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다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헌법재판소 판시처럼 응시자격을 제한하려면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던 자가 다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예정인 자”라는 취지의 규정을 변호사법의 변호사 결격사유 및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결격사유에 신설해야 한다.

**5. 결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배경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를 변호사시험에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제도로 운영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응시기회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현실은 여전히 과거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금명간 자격시험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입법정책 차원에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이내로 한 규정은 매우 가혹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대부분 결혼적령기로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로지 변호사시험 공부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그럼에도 응시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결혼 등 인생 전반에 걸친 설계를 하면서 살아갈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기회제한 조항 중 응시기간 5년 이내 요건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자들의 자기인생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5회 응시횟수의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국가가 강제력으로 응시기회를 박탈하여 개인의 장래에 개입하기 보다는 응시자가 스스로의 결과와 책임으로 응시시기와 응시횟수를 결정하도록 함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이 없더라도 그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2019년 6월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논문을 요약·수정된 것이다.



# 누구나 경험하는 두통, 참는 게 능사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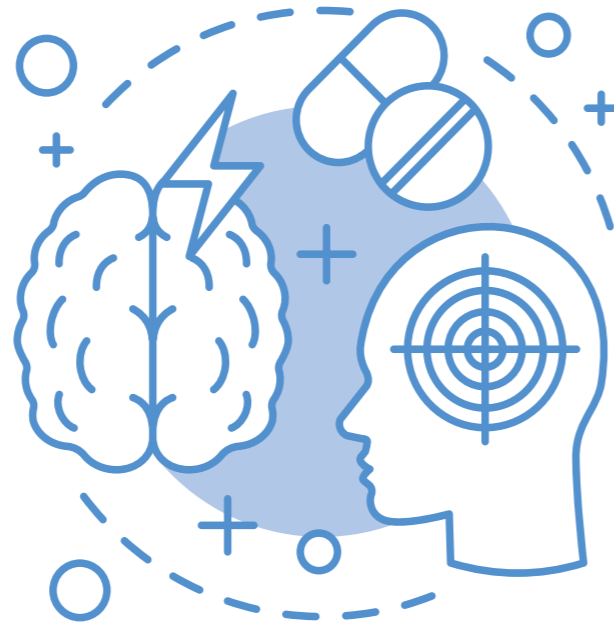
## 뇌의 병 때문일 수도

머리가 쑤시거나 지끈거리는 두통. 두통은 전체 인구의 90%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이다. 두통은 치료 약이 있는데도 통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뇌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두통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만 해도 낫는 게 있다. 뇌 질환 때문에 생긴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숙명여대 졸업  
현 헬스조선 취재팀장/ 기자  
현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고정 패널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블로그)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폐암학회 언론인상 수상



### ◆ 뇌 질환 없이 생기는 1차 두통

두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오히려 큰 질환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질환 없이 생기는 두통은 다음과 같다.

▶**편두통** = 편두통은 빛·소리·냄새·음식 등의 외부 자극에 뇌가 과민반응을 해 뇌 혈관이 수축·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주로 한쪽 머리가 맥박처럼 뛰는 통증이 4~72시간 지속된다. 두통 시작 전에 시야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번쩍거리는 선이 나타나거나 작은 암점이 서서히 커지기도 한다. 통증 강도는 중등도(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음), 심도(모든 활동이 불가능함)에 해당한다. 편두통은 여자 환자가 남자보다 3배 많다. 병원에 오는 두통 환자 중 편두통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실제로 전체 환자의 10%만 병원에 온다. 편두통은 구역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체하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는 사람은 대부분 편두통 환자다. 편두통 약은 적절히 복용하면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편두통이 너무 심한 사람

은 혈류를 좋게 하는 베타차단제 같은 예방 약물을 4~6개월 간 쓰기도 한다.

편두통은 원인을 차단하면 예방이 된다. 주요 유발 요인은 밝은 빛, 소음, 냄새, 월경, 수면결핍 혹은 수면과다, 장기간의 여행, 음주, 특정 음식 등이 있다. 스트레스·피로가 심하거나 끼니를 걸러도 편두통이 생길 수 있다.

▶**긴장형 두통** = 가장 흔한 두통이다.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머리 꼭지를 누르는 통증이 나타난다. 편두통보다 강도는 덜하고 구역감도 없다. 수면패턴의 변화, 술·카페인, 잘못된 자세로 인한 목·어깨 근육 통증,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턱관절 등 다른 곳이 아픈데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긴장형 두통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나면 좋아진다. 그러나 두통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나중에는 진통제가 안 들을 수 있다. 한 달에 보름 이상 두통이 지속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약물과용성 두통** = 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몇 달씩 복용하면 약물과용성 두통이 생긴다. 약물과용성 두통이 발생하면 하루 종일 두통이 지속되며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 진통제를 소량씩 매일 복용하는 것이 과량을 일주일마다 복용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약물과용성 두통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약물은 케토롤, 펜잘 등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처럼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다. 약물과용성 두통은 약을 끊어야 치료가 된다. 약을 끊기가 힘들면 약을 한 번만 먹고도 진통 효과가 긴 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 ◆ 뇌 질환으로 인한 위험한 2차 두통

두통이 뇌종양·뇌졸중·뇌수막염 등 중증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뇌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을 때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한 증상이 동반될 때 ▲구토·실신·의식 소실이 동반될 때 ▲경련이 동반될 때 ▲두통이 점차 심해질 때 ▲운동 마비 증상이 동반될 때 ▲시력저하·눈 통증과 출혈이 동반될 때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

### 두통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6점)
- ② 드물게 그렇다(8점) ③ 때때로 그렇다(10점)
- ④ 매우 자주 그렇다(11점) ⑤ 항상 그렇다(13점)

- 1 두통이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두통이 심하다고 느끼나?
- 2 두통 때문에 얼마나 자주 집안일, 직장일, 학교 또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나?
- 3 두통이 있을 때 누워서 쉬고 싶을 때는 얼마나 자주 있나?
- 4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일 또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피곤했나?
- 5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짜증이나 신경질이 났나?
- 6 지난 4주 동안 얼마나 자주 두통 때문에 일 또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힘들었나?

※ 문항 별로 점수를 매긴 뒤 합계점수가 56점 이상이면 의사 진찰 권장.

작했을 때 등이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병원에 가서 뇌 MRI·CT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두통 없애는 생활습관

1차 두통은 생활습관 관리만 잘해도 좋아진다.

#### ① 환기를 자주 한다.

대기 중에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금속, 유리, 비닐, 화학물질 및 각종 공해 물질이 섞여 있어 이들이 두통의 원인이 된다. 밀폐된 공간은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좋다.

#### ② 적당한 운동을 한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강화해주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주며, 목과 어깨, 허리 등의 근육 긴장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근육 긴장도가 낮아지면 심리적 긴장이 낮아져 두통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두통에 도움이 되는 적당한 운동은 조깅, 속보, 사이클,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이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두통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 과도한 운동은 삼가고 운동 중, 후 두통이 발생한다면 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④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화를 내거나 불안해지면 교감신경계가 촉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상태에 빠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스트레스는 두통의 악화요인이 된다.

④ **장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을 삼간다.**

잘못된 자세는 목과 어깨 등의 근육의 긴장도를 높인다. 특히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은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⑤ **끼니를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는다.**

6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공복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치가 낮아져 뇌로 혈당을 공급하기 위해 뇌혈관이 수축하게 되며, 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복 시 두통이 잦은 경우, 소량의 음식을 하루 4~5회 먹는 것이 두통을 경감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좋다.

⑥ **카페인 과다 섭취를 피한다.**

카페인을 일차적으로 뇌 표면의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효과가 소멸된 이후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두통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커피는 하루에 두잔 이하로 마시는 것을 권하며 홍차, 코코아, 콜라 등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⑦ **술, MSG같은 두통 유발 물질을 피한다.**

술은 이견이 없는 대표적인 두통 유발 물질이다. 그 밖에 아스파탐, 아질산염, MSG, 아민은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⑧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 안에서 신경전달물질이 원활하게 교류하지 못해 신경에 무리가 오고, 수면이 과도하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서 뇌혈관이 확장돼 인접 신경을 압박한다. 수면 부족, 과다 모두 두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수면 시간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편두통 환자는 밝은 빛 피해야**

편두통은 뇌 자극의 원인을 피하는 등 생활 속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생활습관만 지켜도 편두통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말한다. 편두통의 가장 큰 원인은 밝은 빛이다. 빛이 눈을 통해 들어와 뇌신경을 자극하면서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햇볕이 쨍쨍한 날 외출을 할 때는 가급적 모자 등으로 빛을 가려야 한다. 또 초콜릿, 치즈·와인, 오래된 캔 햄은 편두통을 유발하는 성분(카페인, 티아민, 아질산염)이 들어 있는 식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끄러운 소리·특정 냄새도 편두통을 일으킨다. 수면 불균형·운동부족·월경 등은 편두통 악화 요인이다. 최근에는 비만도 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여성호르몬이 두통을 유발한다.

〈**진통제 먹어, 말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긴장형 두통은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된 근육에 의해 유발되므로 두통 발작 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 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일부 정신과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긴장형 두통의 대부분은 경도나 중등도의 통증으로 단순 진통제나 NSAID로 조절될 수 있으나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주로 카페인이 포함된 복합진통제를 투여한다. 다만 진통제는 의존성,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있어 지속해서 사용할 경우 두통을 만성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여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불안이나 기타 정신적 장애로 인한 긴장형 두통은 진통제로 충분히 치료되지 않으므로 항우울제 등을 같이 복용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이런 변호사는 없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은 AI와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화가, 사진가, 작가, 지휘자 등을 꼽았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은 똑똑하기로는 개발자의 두뇌를 훌쩍 뛰어넘어 스스로 사고(思考)하고, 분석하며, 심지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활동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2500달러(약 5억원)에 낙찰된 '에드먼드 데 벨라미의 초상화'는 인공지능의 작품이었고, AI 작곡가 보이드(Boyd)는 이미 두 번째 싱글 앨범까지 발표한 상태다. (보이드의 음악이 얼마나 신나는지 한번 들어보라.)

법조계에서도 AI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 변호사인 로스(Ross)는 뉴욕 대형 로펌 베이커앤드 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와 고용계약을 맺고, 파산분야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로스는 새로운 판례와 법률을 스스로 학습하며 자기 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만하면 인간 법조인과 겨루기를 할 만해 보인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법률 AI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변호사팀(변호사+변호사)과 시팀(일반인+AI)이 제시된 근로계약서를 정해진 시간동안 자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대회에서 1~3등 모두 AI가 속한 팀이 차지했다. AI 변호사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영화 <백투더퓨처>(1985)에서의 과학'공상'으로 여겨지던 전자안경, 공중비행 카메라 등이 오늘날 VR헤드셋이나 드론으로 구현된 것을 보면 그리 요원한 일도 아니다.

# 영원한 2인자 ‘자파(Jafar)’에게

경고 : 알라딘 영화(실사판)를 보지 않은 분들께는 약간의 내용누설(스포일러)이 있습니다.



조원익 변호사

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유) 로고스

## 이 달의 영화



알라딘(Aladdin)  
모험, 판타지 | 2019.5.23 개봉 | 128분 | 미주 | 전체관람가

자파, 당신은 나를 본 적 없지만, 나는 당신을 <알라딘 (Aladdin)>이란 영화에서 당신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램프를 찾지 않았다면 알라딘이 아그라바 왕국의 공주인 자스민에게 청혼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알라딘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았다면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의 진면목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램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램프의 마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신을 마냥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자파, 당신이 있었기에 알라딘이 있는 것이지요.

자파, 당신은 늦쇠 램프 안에서 지난 실수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나요. 혹시 일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했던 것인가를 스스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당신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정치인이 된 것 만큼이나, 램프 속에서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신의 위험한 권력욕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경비대장 하킴이 당신에게 불복종한 이유를,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을 사용해서 ‘지니’를 풀어준 이유를, 자스민이 여왕이 되고 알라딘과 결혼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될 테니까요.

### 1. 하킴의 불복종 - 저항권

자파, 당신은 램프의 지니에게 첫 번째 소원으로 무엇을 빌었나요? 왕(술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자스민 공주의 아버지(부왕)에 이어서 왕국의 2인자였는데, 그 2인자 자리를 끝내 잡지 못하고 1인자가 되기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행복했나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었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간간하고 엄격한 원직주의자이자, 왕을 가장 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경비대장 하킴은 당신의 첫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파, 당신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부왕과 자스민 공주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는데, 하킴은 끝내 거부합니다. 하킴은 왕국 최고의 검사인데다가 법과 원칙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2인자였을 때도 당신의 지시에 복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킴은 오히려 왕이 된 당신의 지시를 거부했어. 당신은 그때 무척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그 당황 때문에 두 번째 소원을 급하게 사용하게 되었지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힘으로 하킴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하킴은 끝내 복종하지 않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의 힘으로 하킴을 사라지게 만들었지요. 그래도 당신은 만족하지 못했겠지요. 왕이 되었는데도,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서 힘을 보여줬는데도, 하킴은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저항권’이란 권리를 아나요.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국민이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파, 당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저항권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3.1운동을 통해 일

본 제국주의에 평화적으로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독재를 이어가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혁명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6.10 시민 혁명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왕(술탄)이 되기만 하면, 1인자가 되기만 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말에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도 하킴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이 있고,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넘어서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저는 인간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단지 2인자가 1인자가 되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항권 행사에는 ‘중대성’, ‘명백성’, ‘최후수단성’이라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거든요. 하킴은 왕국을 흔들어버리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인 자파, 당신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자파, 당신과 하킴이 다른 부분입니다.

### 2. 지니의 해방 - 권력 분립의 원리

자파, 당신은 아마 아직도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풀어준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알라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빌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준다는데, 제 요즘 소원은 평생 놀고 먹어도 괜찮은 삶인데, 그런 소원 하나 짚은 빌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해방시킨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지니에게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알라딘은 지니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알라딘은 이웃나라의 왕자가 되어서 자스민에게 청혼한 이후 갑자기 돌변해서 지니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니를 대단히 실망시켰지요. 알라딘도 사람이고, 아무리 진흙 속의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니의 마법의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와의 우정이나 약속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알라딘은 램프의 마법이 가진 놀라운 힘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파, 당신을 통해서요. 당신은 램프를 사용해서 왕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 왕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자스민 공주와 강제로 결혼하려고도 했지요. 알라딘은 램프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것이에요. 자기가 마지막 소원을 다 사용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 손에 램프가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라딘은 그 짧은 순간,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니가 되고 사막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마침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니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자파, 당신이 램프의 마법을 사용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유신 헌법(1972년)이 기억납니다.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중 1/3을 임명할 수 있고,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권으로 법률이 없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었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선제 기구를 통해 선임 되면서도 임기 6년에 횡수의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곧바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유신 헌법의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검열하고 차단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으며, 사형 선고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법살인(인혁당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억울한 사정은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신 헌법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대통령 1인에게 몰려 있던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유신 헌법의 정당성을 내세운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저는 그 홍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라딘은 자파, 당신이 램프의 마법으로 왕이 되었고,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었으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지니가 되는 것을 보고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알라딘을 추운 극지방으로 날려버리고, 하킴을 사라지게 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보았거든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유신 헌법을 보면서 절대 권력의 위험함을 직시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단지 알라딘이 과거에 했던 약속때문에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해방시킨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라딘은 자파, 당신을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힘’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통제될 수 없는 힘이라면 차라리 그 힘을 없애버리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과 자스민 공주가 미래에도 계속 안전하니까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정부, 사법기관인 법원이 입법권, 행정권(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가짐으로써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구요,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렸습니다. 자파, 당신이 생각하는 왕국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분립 아래에서 국가의 권력은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뉘며 각 조직은 서로에 대해 견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3. 여왕의 등극 - 법은 보편적 가치에 따라 바뀌어 가는 것

자파, 당신은 책을 열심히 보고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자스민 공주를 한심하게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2인자의 자리를 탈출하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부왕에게 자스민 공주와 당신을 결혼시키라는 최면을 시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램프의 마법으로 왕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서 강제로 결혼하려고까지 했구요.

자파, 당신은 자스민 공주에게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는 법률을 제시하면서 쓸 데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도 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의 엄청난 참극을 경험한 왕은, 법을 바꾸어 여자도 왕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자스민 여왕은 다시 법을 바꾸어 공주가 왕자와만 결혼할 수 있다는 법을 바꾸어 알라딘을 당당히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



고, 부당한 국가권력을 정당하게 만들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합니다. 왕의 나라가 시민의 나라로 바뀌어 간지가 오래입니다. 아까 유신 헌법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참혹한 헌법조차도 바뀌어 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인류 문명사에서 법(실정법)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 일정한 방향이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과거의 법과 제도가 당연한 것이었고, 누구나 따라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고, 바꾸기 원했기 때문에 법은 바뀌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권력자가 신분을 나누고, 그 신분 따르던 역할과 가능한 행위 양식을 전부 규정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비와 평민과 양반 귀족과 왕족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의 가지 수까지 규율했던 것이 과거의 제도였습니다. 출신에 따라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수 있었던 시절이 불과 1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차별이 남아있지만, 그런 차별은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제기의 근간에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과 ‘평화’, ‘자유’와 ‘평등’와 같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가치들이 실정법을 해석하는 기준이고, 실정법의 변화를 논의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에서 벗어

난 실정법은 개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스민 공주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는 지극히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고, 왕족이 왕족 아닌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도 신분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인간의 사랑 때문에 제기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권’이라는 규범도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저항권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일에 저항했고,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자파, 이제 긴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늦쇠 램프 속에 있는 당신에게 이 글이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당신을 보면 안타까워요. 자파, 당신도 도둑에서 정치가로 변신했잖아요. 그때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나요. 도둑이 평생 도둑으로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도둑조차도 정치인을 꿈 꿀 수 있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기회가 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당신은 그 좋은 문제의식을 단지 왕이 되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자파, 당신이 있었기에 알라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파, 당신이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니보다, 가장 평범한 인간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  
뮤지컬 스위니토드

뮤지컬 <스위니토드>는 1979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이후 세계 유수 시상식을 석권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작품이다. 특히 미국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티븐 손드하임'의 수준 높은 음악이 어우러져 40년간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음산한 연출로 공연 첫날 관객의 절반이 공연장을 빠져나간 에피소드는 뮤지컬 팬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로 꼽힌다. 원작에 대한 높은 기대만큼 오는 10월 막을 올리는 국내 공연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외딴 섬으로 추방당한 뒤 15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이발사 '스위니토드'역에는 조승우, 홍광호, 박은태가 캐스팅되었으며, '스위니토드'에게 연정을 품고 그의 복수를 돕는 파이가게 주인 '러빗부인' 역은 옥주현, 김지현, 린아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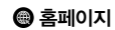
- ① 공연기간 2019.10.02 ~ 2020.01.27.
- ② 공연장소 샤롯데씨어터
- ③ 티켓가격 VIP석\_150,000원, R석\_130,000원
- ④ 홈페이지 www.odmusical.com



세상을 향한 따뜻한 위로  
연극 오피스

연극 <오피스>는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라일 케슬러의 대표작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9월에 초연됐다.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고아형제 '트릿'과 '필립'이 어느 날 종년의 시카고 갱 '해롤드'를 우연히 납치해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가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세 인물이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최근 공연계의 화두인 젠더프리 캐스팅이 시도된 작품으로, 트릿에게 납치돼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해롤드' 역에는 박지일, 정경순, 김뢰하가 캐스팅되었다. 형 '트릿' 역은 배우 김도빈, 최유하, 박정복이, 동생 '필립' 역은 배우 김바다, 최수진, 현석준이 맡아 무대에 오른다.

- ① 공연기간 2019.08.24 ~ 2019.11.17
- ② 공연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 ③ 티켓가격 R석\_60,000원, S석\_40,000원
- ④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더 뮤즈:  
드가 to 가우디

자연의 색과 곡선에서 영감을 받은 안토니 가우디만의 경쾌하고 자유로운 느낌은 조각물 위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 전해지고, 색채 미술사 앙리 마티스의 색종이 작품과 에드가 드가의 그림은 뮤지컬로 재현됐다. 밀레, 드가, 가우디 등 19세기 거장 9명의 예술작품이 미디어 아트 기술로 재탄생한 것. <더 뮤즈: 드가 to 가우디> 전시의 관람객들은 나열된 명작을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전통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오감을 이용해 거장의 작품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면 빛과 색이 펼쳐지고, 손을 움직이면 화면 속 그림이 움직이는 등 적극적인 관객이 더 많은 거장들을 만나고 느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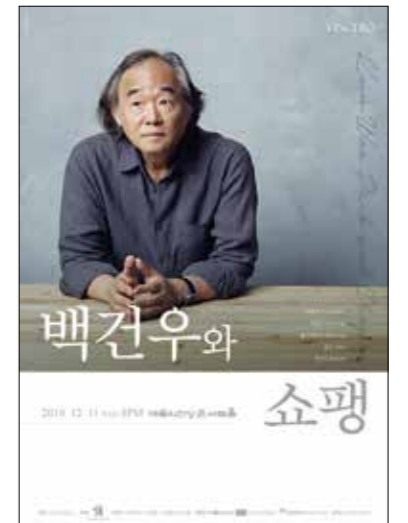
- ① 전시기간 2019.05.21. ~ 2020.02.16.
- ② 전시장소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 ③ 티켓가격 15,000원
- ④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다시, 백건우  
백건우와 쇼팽

2019년 봄, 쇼팽 리사이틀 11개 도시 투어로 수많은 관객과 소통한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오는 12월 <백건우와 쇼팽>으로 다시 돌아온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지 올해로 63년, 세계적인 권위의 콩쿠르에서 수차례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오른 백건우. 일흔을 넘긴 나이에 매일 피아노 연습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를 사람들은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부른다. 음악의 흐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구성을 통해 관객들이 마치 처음 듣는 듯이, 혹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듯이 쇼팽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백건우가 가장 백건우적이며 쇼팽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 ① 공연일정 2019.12.11, 8PM
- ②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③ 티켓가격 R석\_100,000원, S석\_70,000원
- ④ 홈페이지 http://www.vincero.co.kr/project/20191211/





#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군사법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3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19. 11. 8.(금) 09:30 ~ 18:00

○ 장소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 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본선진출 12개팀)

○ 팀별 참가인원 수 : 2~3명

○ 방법 : 추첨을 통해 군검사 6팀, 변호인 6팀 편성, 자유변론경연 방법

1. 대본공지 및 신청서 등 접수 :  
2019. 9. 9.(월) ~ 10.3(목)

가. 대본공지 :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www.hcat.mil.kr)  
나. 신청서, 군검사의견서, 변론요지서  
(이메일 접수 주소 추후공지)

2. 본선 진출팀 발표 : 2019. 10. 25.(금) 12개팀,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

3. 시상내역

구분	상장	상금
경연팀	국방부장관상	2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장상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	각 100만원
	육·해·공군 참모총장상	각 100만원
	고등군사법원장상(6개팀)	
최우수 변론상(개인)	교육부장관상	50만원

4. 기타  
경연대회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2-748-1441)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최 : 국방부(고등군사법원)

◎ 후원 :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육/해/공군본부 등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Law Quiz



**Q1**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48년 헌법은 위헌법률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관장하는 탄핵재판소를 별개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ㄷ.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ㄹ.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ㅁ.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그리고 헌법위원회가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ㅂ. 1987년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소원심판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ㄹ, ㅁ    ⑤ ㄷ, ㅁ, ㅂ

**Q2**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가 자고 있는 X빌라 2층 유리창을 향하여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졌으나, 그 화염병이 B가 살고 있는 X빌라 1층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거실 커튼에 불이 붙어 불길의 솟아올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가 질식사 하였다. CCTV를 통해 甲의 범행을 확인한 사법경찰관 P는 빌라 관리인으로부터 위 영상을 임의 제출받고, 甲을 긴급체포한 후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며,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② 甲에게는 B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며, B에 대한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B가 甲의 직계존속이었던 경우 甲에게는 존속살해죄만 성립한다.
- ④ P가 甲을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법관으로부터 사후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⑤ P가 임의제출 받은 CCTV 영상녹화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Q3** 상사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제항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지만,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상법상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③ 상사매매에서 목적물인 사과의 과실이 썩어 있는 경우에 수령한 즉시 하자를 통지하지 못했더라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는 이를 발견한 즉시 하자를 통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상사매매에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6개월 경과 후에 발견된 경우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⑤ 포장지가 특정인의 주문에 따른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되었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인쇄되어 있어서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본 문항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2차적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문항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